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48 호

2018년3월13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71호 여수 대옥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72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18-75호 CCTV(교차로 돌발감시, 전광판 상태감시, 무인단속, 도로방범)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7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649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18-651호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14
- 여수시 공고 제2018-658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35
- 여수시 공고 제2018-660호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0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 대옥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고시

여수 대옥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 대옥지구 새뜰마을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사업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생활여건 개선
3. 사업비 : 1,191,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 5건
    - 하수도정비 350m, 방범 CCTV 3개소, 담장정비 및 마을안길 확장 330m, 마을회관 리모델링 1개소, 다목적광장 1,800m<sup>2</sup>
  - 주택정비 : 3건
    - 슬레이트지붕 개량 20호, 집수리 18호, 빈집 철거 3호
  - 마을환경개선 : 마을앞길 정비(꽃길)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 7건
    - 휴먼케어 6건, 주민역량강화 1건, 계획 및 설계 1식
  - 기타(제경비) : 4건
    -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사업관리비, 석면사전조사비
5.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6. 사업기간 : 2017.11 ~ 2019.12

7. 고시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재생과(☎659-4559)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3.13.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붙임 참조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454	8	집산도로	13	중로1-10 국동 304-2	국동 남6길 국동 304-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1455	8	국지도로	314	돌산읍 신복리 1 111-5도	돌산읍 신복리 1154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99	15	보조 간선도로	6,700	대2-7 가장리 1585-1답	중1-80 봉두리 1247-5답	일반 도로	-	여고-67호 09.05.13	
변경	중로	2	99	15	보조 간선도로	6,770	대 2-7 가장리 1580-2	중1-80 봉두리 1247-5답	일반 도로	-	여고-67호 09.05.13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454	· 도로 신설 - L=13m, B=8m	국동 남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1455	· 도로 신설 - L=314m, B=8m	주민통행 및 선착장 방문차량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낙후된 어촌의 생산, 소득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어촌 관광관련 소득증대, 어촌관광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어촌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신설
중로 2-99	중로 2-99	· 도로 연장 변경 - L=6,700m→6,770m, B=15m ·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대 2-7 가장리 1585-1답 - 종점: 대 2-7 가장리 1580-2도	도로 개설(확장)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 노선 변경

## CCTV(교차로 돌발감시, 전광판 상태감시, 무인단속, 도로방범)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시에서는 도로 및 교차로의 실시간 교통흐름 파악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와 도로전광전광판(VMS) 시설물 상태 감시용 웹카메라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무인단속CCTV(과속 및 신호위반),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방범용CCTV 설치 예정인 상태감시용 감시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3일

# 여 수 시 장

### 1. 행정예고내용

- 가. ITS 도로 및 교차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나. 도로전광전광판(VMS) 감시용 웹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다. 무인단속(신호 및 과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라. 도로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설치목적

- 가. 도로 및 교차로의 실시간 교통흐름 파악
- 나. 도로전광판(VMS) 시설물 상태 감시
- 다.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
- 라.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

###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년 3월 13일 ~ 4월 1일 (20일)

### 5. 설치예정지 위치(59개소) : 별도첨부

###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8년 4월 1일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 (참조 : 교통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전 화 : 061) 659-4137
- 팩 스 : 061) 659-5837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osu.go.kr> (바탕화면 → 고시/공고)



※ 별첨

□ CCTV 설치 예정 장소

번호	지점명	주소	비고
CCTV 1	신설국도22호선교차로	여주시 소라면 죽림리 735-20	
CCTV 2	선관위부근 삼거리	여주시 화장동 934	
CCTV 3	신동아AP 앞 사거리	여주시 선원동 1007-1	
CCTV 4	소제마을 삼거리	여주시 소호동 1181-1	
CCTV 5	웅천CGV 앞 사거리	여주시 웅천동 596-4	
CCTV 6	웅천부영1차 앞 사거리	여주시 웅천동 1523-1	
CCTV 7	국동우체국앞 삼거리	여주시 국동 1048	
CCTV 8	수정 사거리	여주시 수정동 203-2	
CCTV 9	미평주공 삼거리	여주시 미평동 121-10	
CCTV 10	주동 사거리	여주시 주삼동 739-23	
CCTV 11	GS칼텍스 앞 삼거리	여주시 적량동 1326	
CCTV 12	건보공단앞 사거리	여주시 웅천동 1584	
CCTV 13	장성 삼거리	여주시 안산동 713-2	
CCTV 14	만성리 해수욕장 삼거리	여주시 만흥동 95-17	
감시CA 1	롯데마트(선사유적공원)	여주시 만흥동 94-3	기설CCTV 5
감시CA 2	석창 사거리	여주시 여천동 881-26	기설CCTV 8
감시CA 3	쌍봉 사거리	여주시 학동 138	기설CCTV 9
감시CA 4	도원 사거리	여주시 안산동 508-2	기설CCTV 10
감시CA 5	시청 로타리	여주시 학동 138	기설CCTV 11
감시CA 6	롯데첨단소재 삼거리	여주시 신기동 78	기설CCTV 12
감시CA 7	둔덕 삼거리	여주시 봉계동 33-2	기설CCTV 14
감시CA 8	신기 삼거리	여주시 신기동 172	기설CCTV 13
감시CA 9	11호 광장	여주시 둔덕동 526	기설CCTV 15
감시CA 10	문수 삼거리	여주시 오림동 415	기설CCTV 16
감시CA 11	한재터널 교차로	여주시 여서동 403	기설CCTV 17
감시CA 12	여서동 로타리	여주시 여서동 874	기설CCTV 18
감시CA 13	오림 삼거리	여주시 연등동 709	기설CCTV 20
감시CA 14	중앙동 로타리	여주시 중앙동 758	기설CCTV 21
감시CA 15	한재 사거리	여주시 서교동 234-2	기설CCTV 22

번호	지점명	주소	비고
감시CA 16	돌산대교 입구	여수시 남산동 58	기설CCTV 23
감시CA 17	대교동 사거리	여수시 봉산동 200-7	기설CCTV 24
감시CA 18	송현 삼거리	여수시 웅천동 1215-3	기설CCTV 25
감시CA 19	시외버스 터미널	여수시 오림동 388-6	기설CCTV 29
감시CA 20	한국실리콘 앞	여수시 화치동 1316	기설CCTV 30
감시CA 21	만덕 사거리	여수시 덕충동 61-82	기설CCTV 32
VMS 1	신설국도22호선교차로부근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747-3	WebCamera
VMS 2	터미널 이마트 앞	여수시 오림동 415	WebCamera
VMS 3	여수 전남병원 앞	여수시 광무동 96	WebCamera
VMS 4	미평주공후문 버스승강장 앞	여수시 미평동 823	WebCamera
무인단속 1	주삼동사무소 앞 석창사거리 방면	주삼동 289-1앞	신호,과속
무인단속 2	대동맥주유소 건너편 산단방면	해산동 540-26 맞은편	과속
무인단속 3	주삼동사무소 앞 산단방면	봉계동 457-1앞	신호,과속
무인단속 4	여천NCC삼거리 광양방면	평여동 434-7앞	과속
무인단속 5	롯데케미칼1공장삼거리 광양방면	중흥동1674-2맞은편	신호,과속
무인단속 6	산단주유소사거리 순천방면	화치동 1328 맞은편	신호,과속
무인단속 7	엑스포정비삼거리 순천방면	월하동 562-23 맞은편	신호,과속
무인단속 8	호남화력삼거리 광양방면	월내동 280앞 도로	신호,과속
무인단속 9	롯데케미칼사거리 광양방면	중흥동 750-2앞 도로	신호,과속
무인단속 10	하이테크사거리 순천방면	화치동1392 앞 도로	과속
무인단속 11	금호폴리캠 2공장 앞	산단중앙로 613 도로	신호,과속
무인단속 12	웅천부영2차사거리 시청방면	웅천동19-35 맞은편	신호,과속
무인단속 13	금호석유화학 제1공장 앞	산단중앙로 331 도로	과속
도로방법 1	송현삼거리 부근	신월로 168	
도로방법 2	한재로터리 부근	한재로 2	
도로방법 3	롯데 첨단소재 삼거리 앞	시전3길 5	
도로방법 4	죽림사거리	원죽길 3	
도로방법 5	오림삼거리	좌수영로 237	
도로방법 6	11호광장 앞	좌수영로 482	
도로방법 7	둔덕IC 부근	상암로 105	

##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 여 수 시 장

1. 시정명령 대상 업체 : 불임
2. 시정명령일시 : 2018. 3.12.
3.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18. 3.13.~ 3.23.
4.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제3호
5. 시정명령내용 :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명령 대상 업체

연번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주)태성건설	안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2	(주)대광솔루션	문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3	(주)대신기공	김철*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4	(주)희성프랜트	김희*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5	(주)진원산업개발	박종*	포장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6	(주)대한엔지니어링	김정*	수중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7	(주)본성	김도* ,구옥*	도장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8	태원건설(주)	정기*	토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9	(주)세영	오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및 육성계획 공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육성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3. 1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여수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2. 사업기간 : 2018. 4. ~2018. 12.
3.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4. 사 업 량 : 3개 기업(기업당 20백만원 한도)
5. 신청대상 : 마을기업 창업 준비 단체 및 기업
  - 2018년 신규 마을기업(행안부형, 전남형 예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
  - 2019년 신규 마을기업(행안부형, 전남형 예비) 준비 중인 마을공동체
6. 사업선정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선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형 주민 공동체 사업
  - 지역특산물 및 자연자원 활용사업, 자연 생태관광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등

## 7. 마을기업 요건(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
- 마을기업 5명이상이 출자하고, 6인 이상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여수형 마을기업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해야함.
- 마을기업은 지역(마을)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기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등

## 8. 선정방법 : 여수시 마을기업 육성 심사위원회 선정

## 9.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 등(시설비 제외)

- 지원액 : 1개 마을기업 당 20백만원 지원

## 10. 신청절차



## 11. 신청서 접수 및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8. 3. 14.(수)~2018. 3. 22.(목)
- 접수처 :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지역공동체팀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여수시청 일자리정책관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 심사 및 선정 : 접수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 ※ 중복지원 제한 안내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12. 신청서식

- 가. 여수형 마을기업사업 신청서 【서식 1】
- 나. 여수형 마을기업사업 계획서 【서식 2】
- 다. 여수형 마을기업 회원명단 【서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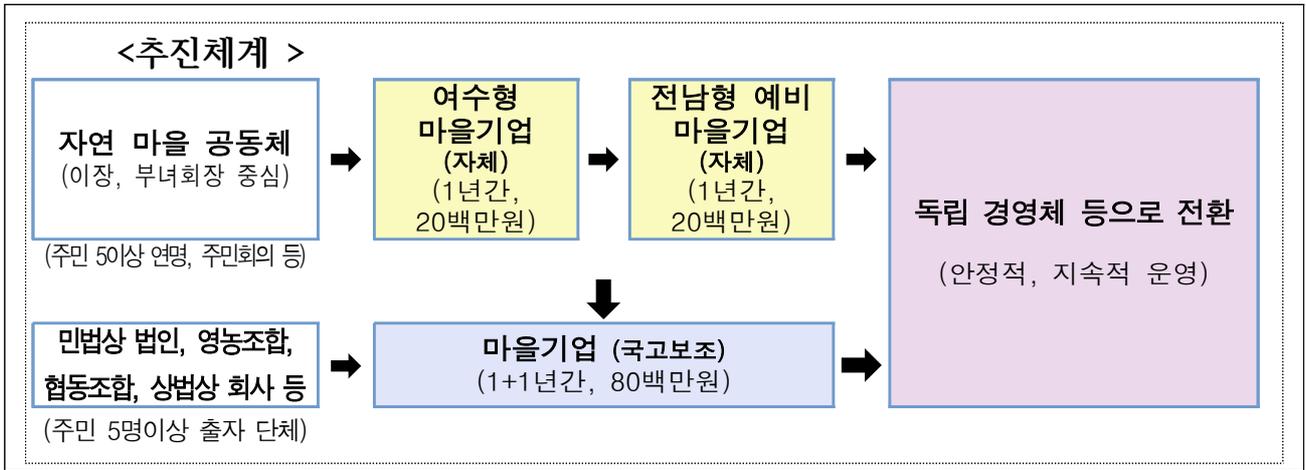
###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회원 명단(서식3),
-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정리)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13. 문 의 처 :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 (061)659-3598

### ◆ 여수형 마을기업이란 ?

「여수형 마을기업」 사업은 여수시가 지역공동체의 「마을기업 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민들간 공감대 형성,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여수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1. 신청사업명 :

## 2. 사업 필요성

- 
- 

## 3. 사업개요

###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 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 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 4. 기대효과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

## 5. 예산 계획

###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8년~2020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7. 마을기업의 특성

###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 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

【서식 3】

## 여수형 마을기업 회원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 와의 관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사업 계획 동의 여부
1								○	친필 서명
2								○	친필 서명
3								○	친필 서명
4								○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018. 3.

-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참여 중심」 -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계획**

〈 공 모 개 요 〉

- ◇ 공고기간 : 2018. 3. 13.(화) ~ 3. 22.(목)
- ◇ 접수기간 : 2018. 3. 14.(수) ~ 3. 22.(목)
- ◇ 공모규모 : **3개** 마을기업(여수형 마을기업)
-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기업당 20백만원
- ◇ 지원내용 : 교육, 기본및전문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 등(시설비 제외)



**여 수 시**  
(일자리정책관실)

#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계획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추진코자 함.

##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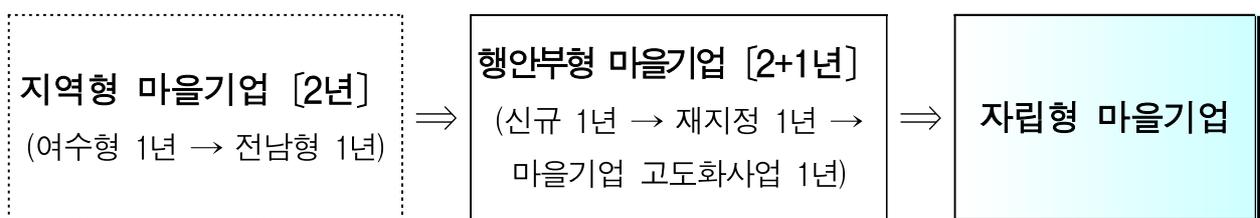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욕구가 점차 증가

### 1 지역공동체 이익의 효과적인 실현

-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창출된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순환 경제활동 모델 구현

### 2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 사업비 지원 종료 후에도 자생력을 갖고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 II 지원근거

-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 공모계획

###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8. 3. 13.(화) ~ 3. 22.(목)
- 접수기간 : 2018. 3. 14.(수) ~ 3. 22.(목)
- 사업량 : 3개 마을기업
- 사업비 : 60백만원 (시비), 기업당 20백만원
- 신청자격 : 최소 지역주민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 출자한 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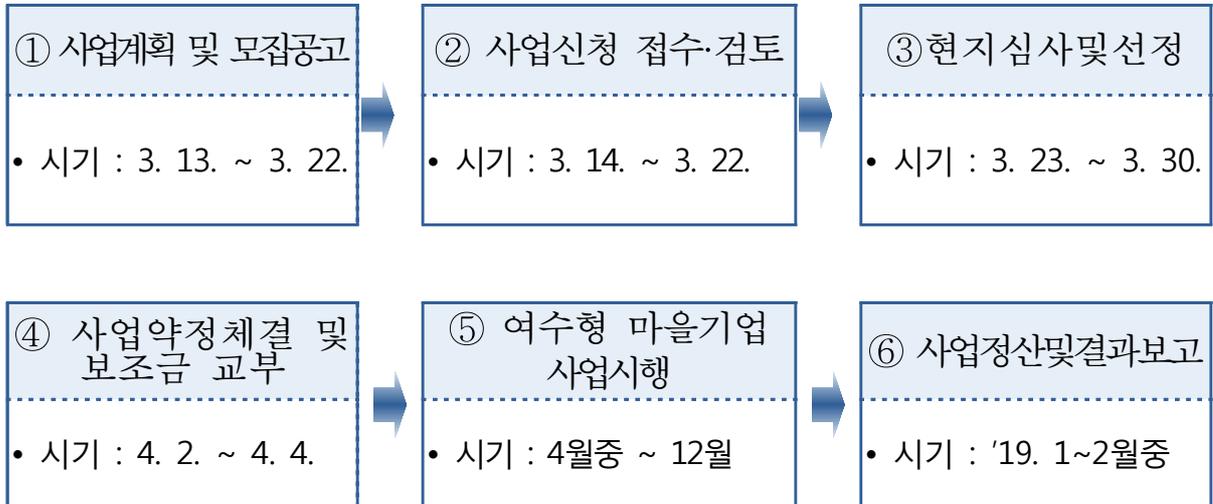
-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
  - 마을기업 5명 이상이 출자하고, 6인 이상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 \*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여수형 마을기업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마을)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기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등

- 신청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형 주민 공동체 마을사업
- 선정방법 :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선정 \* 별도 평가계획 수립 시행

### □ 사업비 지원

- 지원액 : 1개 마을기업 당 최고 20백만원(자부담 20% 이상 별도)
-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 등(시설비 제외)

## □ 추진일정



\* 사정에 의해 추진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IV 세부 운영계획

### 1 운영개요

####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8. 4. ~ 12.

\* 공모 및 신청접수(3월) → 최종확정(3월) → 사업수행(4월~12월)

○ 육성규모 : 3개 마을기업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

- 1년간 지원,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차년도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를 심사하여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및 '행안부형 마을기업' 으로 선정 육성. **최장 5년간 육성**하여 자립 경영을 도모

## ○ 지원내용

- 여수형 마을기업,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과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 여수형 : 20백만원(1년)
  - ▶ 전남형 : 20백만원(1년)
  - ▶ 행안부형 : 80백만원+20백만원(2년+1년)
- 지원방식 :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예비 마을기업<sup>\*</sup>) :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sup>\*\*</sup>로 사용하여야 함
  - \* 예비 마을기업은 여수형 마을기업과 전남형 마을기업이 해당됨
  -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 (행안부형 마을기업) :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sup>\*</sup>
  - \*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 운영비

## 2

## 여수형 마을기업 신청 지원자격 및 요건

### □ 기 업 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

##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과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 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지원 가능함

##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회원 명단(서식3),
-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 3. 13.

### 여 수 시 장

1. 지정번호 :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제2018-2호
2. 지정 위치·구역 및 면적

위 치	지점	위도	경도	면 적
전남 여수시 삼일동지선	가	34° 51' 34.194"	127° 39' 31.391"	150.4ha
	나	34° 51' 51.584"	127° 41' 05.555"	
	다	34° 51' 24.647"	127° 40' 40.527"	
	라	34° 51' 04.771"	127° 40' 02.019"	

3. 수산자원의 종류 : 새조개, 피조개
4. 관리수면의 관리자 : 여수시장
5. 어선·어구의 종류 및 수 : 양식장형망선 6척
6.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 2018. 3. 7.~2018. 4. 30.
7. 채취량 : 새조개 26.6톤 이하, 피조개 8.1톤 이하
8. 준수사항 및 제한조건 : 붙임 지정내용 및 조건 참조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

## □ 지정내용

- 지정장소 : 여수시 삼일동지선(150.4ha)
  - 붙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참조
- 지정기간 : 2018. 3. 7.~2018. 4. 30.
- 포획량 : 새조개 26.6톤 이하, 피조개 8.1톤 이하
- 포획·채취 방법 : 양식장형망선 6척
- 포획·채취 어업인 : 여수시 관리수면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자

## □ 지정조건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자는 지정내용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자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지정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는 제 3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다음의 협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여수시는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 보상청구 금지, 어업분쟁 자체 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준설사업( '18. 3.~' 18. 12.)의 준설토 배사관 사업에 따른 피해발생시 어떠한 민원 및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
- 협의구역 인근에 항만시설인 임시항로(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전면항로)로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이므로, 동 임시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된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에 따른 어떠한 민원 및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 상 필요하거나 협의조건을 위반 시 여수시에서는 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배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여수시에서는 동 수면이 항로와 부두가 인접하고 있어 채취선이 항로를 횡단하거나 채취 중 항로를 침범하여 선박, 역무선, 해상장비(준설선, 토운선, 예선 등)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 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 이탈을 방지하여야 하며, 통항선박과 교신이 가능한 감시선과 안전지도선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항계수역을 통항하는 대형선박의 항주파에 따른 소형선박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수면 관리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채취 작업 전 어선명단, 작업일정, 비상연락망 등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안전진도선은 선박식별을 위한 자동식별장치(AIS) 및 교신을 위한 무선통신장비(VHF)를 설치하고 VHF CH67을 상시 청수하여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항로횡단 또는

- 작업 선박 이동시에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유선(061-840-2552) 또는 무선(VHF CH67)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 야간(일몰 후~일출 전)에는 채취 어선 등 관련선박의 항해를 절대 금지하여야 함
  - 어로구역 및 작업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협의구역에서 수산물 포획·채취시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해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 행위가 발생 할 경우 항로표지시설(형상, 등색, 등질 등을 주변 국유표지와 다르게 설치)을 설치하여야 함
  - 광양만의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채취 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협조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를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비치 등)와 제42조제2항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여수시에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사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과 인근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삼일동 어촌계

축척 : 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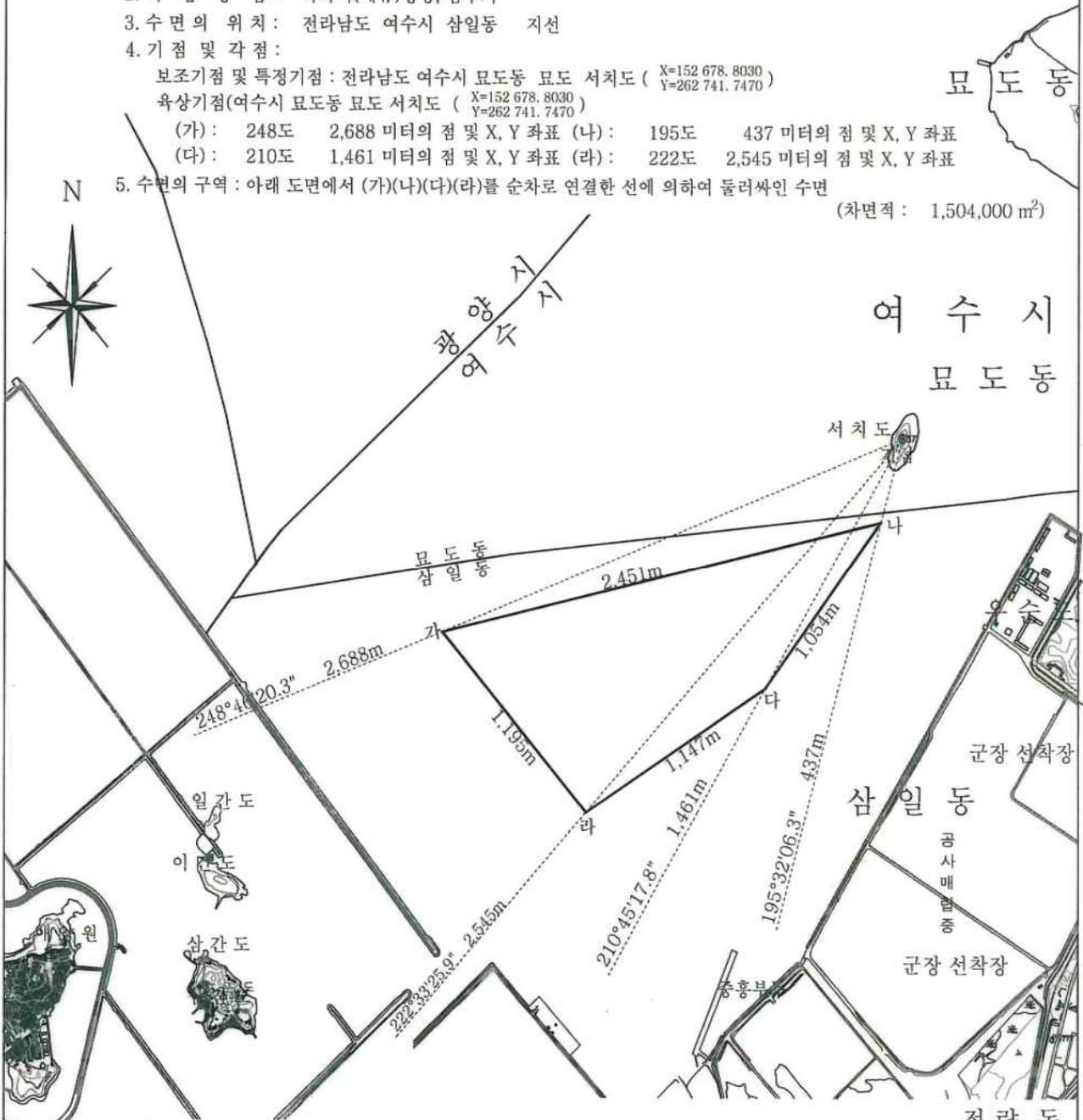
전남여수시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 제 호

1. 어업의 종류 : 수산자원 관리수면
2. 어업 방법 : 바닥식(폐류)형망, 잠수기
3. 수면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지선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묘도 서치도 ( X=152 678. 8030 Y=262 741. 7470 )  
 육상기점(여수시 묘도동 묘도 서치도 ( X=152 678. 8030 Y=262 741. 7470 )

(가) : 248도 2,688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나) : 195도 437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다) : 210도 1,461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라) : 222도 2,545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차면적 : 1,504,000 m<sup>2</sup>)



WGS-84 좌표

부호	N (X)	E (Y)
가	34° 51'34.194"	127° 39'31.391"
	151 725 6450	269 226 3680
나	34° 51'51.582"	127° 41'05.555"
	152 257 5850	262 624 6550
다	34° 51'24.647"	127° 40'40.527"
	151 423 1450	261 994 5620
라	34° 51'04.771"	127° 40'02.019"
	150 804 0640	261 020 4190

부호	거리(M)
가-나	2,451m
나-다	1,054m
다-라	1,147m
라-가	1,195m

## 청우기술 (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등록업체  
 연안조사 측량업 등록(제 01-2012 호)  
 여수연락처: 전남 여수시 여서1로 95-1  
 H.P 010-4602-3889 FAX:(061)662-8967  
 본 사 : (02) 453-7055~6 FAX:(02)453-7098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기술자 한상수  
 (등록번호 : 60018765)

2018.02.21



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6조(청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전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 여수시장

###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청문일시	처분 법적근거 및 사유	비고
(유)유진건설중기 김혜원	상암로648(상암동)	토공사업	2018. 4. 19.(목) 14:0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 (실태조사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	

2. 공고기간 : 2018. 3.13. ~ 3.28.(15일간)

3.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1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시보

5. 공고내용 : 2017년 실태조사 보고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 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05)